

광주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0가단5161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윤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혜인

변론 종결 2024. 6. 14.

판결 선고 2024. 11.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소유권을 C에게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C와 피고 사이의 2019. 4. 30.경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한다.
및 주문 제1항

이 유

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갑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148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6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의무를 주장하였고, 2021. 9. 30. 위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광주고등법원 2021나24638호로 항소하여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항소심의 2022. 5. 18.자 조정기일에서 'C은 원고에게 261,000,000원을 2022. 8. 22.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C이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송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은 2020. 4. 30.경 C 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C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위 주식이 C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실제 주주가 C인지 여부

갑 제1 내지 7, 9,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광주 서구 D을 포함한 E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토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조달받은 후 잔금 지급 단계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여 매수 부동산에 관하여 F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은 이에 대한 대가로 F 주식회사의 주식을 2019년 1,500주, 2020년 500주 합계 2,000주(지분율 40%)를 취득한 사실, C은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G에게 주주 명의를 자신의 처남인 피고로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2019. 12. 31. 기준 1,500주에 관하여, 2020. 4. 27. 기준 2,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C은 위 주식 1,500주, 500주의 각 취득일 무렵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3. 원고의 명의신탁약정 해지권 대위행사

원고가 C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1.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1. 3. 12.경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은 C의 소유임이 확인된다(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정지선

별지